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63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4월 30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송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540호)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582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수정·통합하여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대안)」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한강시민위원회 내 남북협력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원을 폐지, 보다 탄력적인 남북협력분야 논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,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- 또한,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

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14조제2항제6호)
- 나. 한강시민위원회 현행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정원(수) 삭제, 4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2조제2항)
- 다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- 라. 그 외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제2조 제1호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시설은”을 “시설을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

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14조제6항 중 “제13조 제1항”을 “제1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“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

조제1호의2”를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제2항 제2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중 “(별지1호 서식)”을 “(별지 제1호서식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”를 “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24조 중 “기타 이 조례시행과”를 “이 조례의 시행에”로, “시장이 따로 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14조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한강공원”이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공원녹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내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제2조제1호 ----- -----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은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「하천법」 등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시설을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4조(이용료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제14조(이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.</u>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</p>

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 <단서 신설>

④ ~ ⑤ (생략)

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를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~ 9. (생략)

10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. 다만,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, 공사,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,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11. ~ 15. (생략)

② (생략)

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

③ -----

--. 다만,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 제13조제1항-----
-----.

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-----

----. -----

---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-----

-----.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、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에서 해제하여야 하며,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9조(금지행위의 단속) ① ~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제17조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,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(별지1호 서식). 다만,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.

제21조(폐기물 처리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나 이용자로부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처리수수료를 차등징수(이하 “종량제”라 한다) 할 수 있으며, 종량제 실시 대상 폐기물은 「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」 제6조제2항제

제18조(유어행위 금지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제2항제2호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금지행위의 단속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(별지 제1호 서식). -----

-----.

제21조(폐기물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

2호에 따른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4조(시행규칙) 기타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호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한강시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----- 규칙 -----.